

# 고시내용

페이지 : 1/1

게재(요청)일자	2015-03-26	담당부서	도시계획과	이지관
고시공고구분	고시	고시공고번호	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-50호	
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				
제목	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건축범위 변경결정 고시			
내용	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23호(1994.10.07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233호(1999.08.04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2호(2007.12.06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및 건축범위 일괄결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번지 우촌초등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/p> <p>2.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(☎2241-2765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</p> <p>2015년 3월 26일</p> <p>성 북 구 청 장</p>			